

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의결사항

구분	의결사항
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(규약 제9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5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은 영업의 자발적 지원이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으며 기부, 식음료 제공, 기념품 제공, 부스 임대,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(‘23.2.23., 제2차 심의위원회) - 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경비의 회계처리 시 사용된 지원내역에 대한 증빙자료(영수증 등)를 첨부하여야 함 (‘23.2.23., 제2차 심의위원회) - 세금계산서는 판매 및 구매 행위에 대한 증빙서류이므로 자발적 지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발행될 수 없음 (‘23.2.23., 제2차 심의위원회)
전시·광고(규약 제11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8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운용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기준은 모두 세금 제외한 기준임 (‘23.2.23., 제2차 심의위원회) - 세부운용기준 제8조제5호가목 “학술대회의 성격·규모·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”에서의 학술대회의 기준은 참가인원 300명으로 정하며 1부스의 크기 기준은 3MX3M로 정함 (‘23.2.23., 제2차 심의위원회)

<p>강연·자문(규약 제12조 및 세부운용기준 제9조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사 유튜브, 홈쇼핑 등의 명확한 강연형태가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출연을 요청하는 것은 강연 신고 대상임 ('22.8.25., 제1차 심의위원회) - 다만, 콘텐츠 제작시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료, 출연료 등의 금품제공을 하였다라도 주제가 건강기능식품과 무관하면 심의대상이 아님 ('22.8.25., 제1차 심의위원회) - 또한, 콘텐츠에서 제품을 직접 노출하거나 특정 제품이 연상되는 언급 없이 단순 정보전달의 목적을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출연료 등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심의대상이 아님 ('22.8.25., 제1차 심의위원회) -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심의대상 여부는 업체로부터 내용 증빙을 위한 대본(스크립트)을 제출 받아 확인하여 판단 ('22.8.25., 제1차 심의위원회) - 강연 시간 기준과 관련해서 1시간당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20분의 질의응답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최소 강연 시간은 30분(25만원)으로 정하며 10분의 질의응답시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함 ('24.8.8., 제5차 심의위원회) - 시간은 제출한 계획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함 ('24.8.8., 제5차 심의위원회) - 영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와 장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	<p>최종 지급일(잔금 지급일 등)을 기준으로 전체 지급 내역을 일괄 심의 신고하도록 함 (‘26.2.23., 제8차 심의위원회)</p> <p>- 상기에 해당하는 자문 건의 자문 1회당 지급액은 총 지급액을 총 자문 횟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연간 지급액은 일반적인 회계연도(1.1.~12.31.)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함 (‘26.2.23., 제8차 심의위원회)</p>
<p>온라인 학술대회</p>	<p>- 현재 온라인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제약 및 의료기기 협회에서 합의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세부기준을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에도 적용함 (‘23.2.23., 제2차 심의위원회)</p>
<p>영업자 정의 관련 (제3조)</p>	<p>- 영업자의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나 그 관계사가 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견본품 제공, 기부, 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, 제품 설명회, 전시·광고, 강연·자문 등의 방법으로 금품류제공하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해당함 (‘24.8.8, 제5차 심의위원회)</p>